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9] <신설 2024. 4. 4.>

2024년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804		대추야자·무화과·파인애플·아보카도(avocado)·구아바(guava)·망고(mango)·망고스틴(mangosteen)(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804	50	구아바(guava)·망고(mango)·망고스틴(mangosteen)	망고스틴(mangosteen)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	0	수입전량
0809		살구·체리·복숭아[넥타린(nectarine)을 포함한다]·자두·슬로(sloe)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809	2	체리			
0809	29	기타	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	0	수입전량
0810		그 밖의 과실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810	50	키위프루트(kiwifruit)	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.	5	수입전량
2008		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			

		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			
2008	60	체리		5	수입전량
2008	70	복숭아[넥타린(nectarine)을 포함한다]	1.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 은 것	10	수입전량
			2. 기타	5	